

제 1436 호
1989. 5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강고건
편집인 : 공보관반총판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- ◎ 공문시행
물품관리건원소요조치 3
- ◎ 조 례
제 2447 호 : 서울특별시민원실의위원회 4
- ◎ 규 칙
제 2286호 : 서울특별시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 5
제 2287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6

(이면계속)

아 람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용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㉠	고 시	
	제 233 호 : 사료성분등록사항	6
	제 234 호 : 사료성분등록사항	7
㉡	공 고	
	제 417 호 : 도시계획공고	8
㉢	구 고 시	
	제 3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	9
	제 3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9
㉣	구 공 고	
	제 37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완료	10
	제 49 호 : 관인개작	10
	제 148 호 : 관인신조	11
㉤	시 령	

공 문 시 행

(관 인 생 략)

서 울 특 별 시

공원 01754-252

(731 - 6411)

89.5.15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계 목 : 불품관리전환 소요조리

1.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유무를 조회하오니 소요희망 부서에서는 '89.5.31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

2. 위 기일내에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가. 소요조회 대상물품

물품분류번호	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취득년도	상 태
7430-30-001	한글타자기	패시트 15	대	1	1981	요청비

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서과 1-79, 서구 1-22, 서보 1-22, 서사 1-60, 서소 1-13, 지하철공사, 시설관리공단, 강남병원, 농수산물 관리공단, 도시개발공사.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표한다

1989년 5월 19일
서울특별시장 고 전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447 호

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

제 1 조 (목적)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 민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
2.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
3.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

제 3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, 학계, 전문계, 종교계, 노동자, 경제계, 문화계,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의 임기등)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 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

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회의의 구성)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p>②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 3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 (회의의 소집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 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회일, 3 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무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위원장은 서울특별시어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.</p> <p>제 8 조 (회의록등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,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 9 조 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</p> <p>②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되</p>	<p>고 서기는 종합민원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 10 조 (의견청취 및 조사)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,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제 11 조 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data-bbox="698 998 884 105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 <p>규 칙</p> </div> <p>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등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9년 5월 11 일 서울특별시장 오 건 현</p> <p>◎서울특별시규칙제 2286 호 서울특별시관용차량규칙중개정규칙</p>
---	--

서울특별시 관용차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의 차량정수 배정기준중 구의 본청 승용차의 정수에서 중형 승용차 "2대"를 "1대"로 소형 및 짝형승용차 "5대"를 "3대"로 한다.

(별표 2)의 1 급대상중 "1급 내지 3급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별정직, 특정직 공무원 포함)"을 "1급 내지 3급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별정직, 특정직공무원 포함)과 구의 국장급공무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9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장 고 건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287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동법 제 7조 제 1항 제 1호, 제 2호 또는 제 3호의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급수관 손로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수도요금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33 호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랫

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

1989. 5.18

서울특별시장

1. 업체명 : 쥐력키금성사
2.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
3. 대표자 : 변규철

4. 성분등록내역							
등록 구분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 료 성 분 량					
		조단백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16-256	KAL KAN PEDIGREE MEAL TIME (애완용 개사료)	이상 20.16	이상 7.08	이하 3.62	이하 7.98	이상 1.99	이상 1.24
16-257	KAL KAN PEDIGREE (애완용 개사료)	9.02	11.43	1.69	3.53	0.55	0.40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234 호</p> <p>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</p> <p>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항의 규정 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</p>		<p>같이 고시한다.</p> <p>1989. 5.18. 서울특별시 감</p> <p>1. 제조업체명 : ㈜미원백합사료공장 2. 소재지 : 서울서영동로구대림동 629-6번지 3. 대표자 : 김채방</p>					
4. 성분등록내역							
등록 구분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 료 성 분 량					
		조단백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16-258	큰병아리 2호 사료 (18주 - 산란 5%)	이상 15.0	이상 2.5	이하 6.0	이하 15.0	이상 2.0	이상 0.5
16-259	산란초기 2호 (유색계, 산란개시 - 40주)	15.0	2.5	7.0	15.0	3.0	0.5
16-260	육성돈 4호 (2-4개월, 고능력육성돈용)	15.5	2.0	6.0	8.5	0.6	0.4
16-261	포유돈 2호 (임신 3개월 - 이유시, 고 능력포유돈용)	14.0	3.0	10.0	10.0	0.5	0.4
16-262	중송아지 2호 (생체중 100-200)	14.0	2.0	12.0	10.0	0.5	0.3
16-263	육성 비육 2호 (생체중 300-350)	13.0	2.0	12.0	10.0	0.5	0.3

등록번호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 료 분 량					
		조탄백	조적방	조석유	조회분	칼슘	인
16-264	육성비육 3호 (생체중 200-300 조사료급여불능시)	이상 12.5	이상 2.0	이하 15.0	이하 10.0	이상 0.5	이상 0.3
16-265	큰소비육 1-1호 (생체중 350-500)	11.5	2.0	15.0	10.0	0.5	0.3
16-266	큰소비육 1-2호 (생체중 350-500 조사료급여불능시)	11.0	2.0	20.0	10.0	0.5	0.3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417 호

도 시 계 획 안 공 고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용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2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입니다.

2.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9. 5. 19

서울특별시장

-아 래-

가. 공람기간: 1989.5.19 ~ 1989.6.2 (14일간)

나. 공람장소: 성북구청 도시정비과
다. 관련도서: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. (도면영학)

도 시 계 획 안

▷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
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스트	1	10	200	성북구 돈암동 512-231	성북구 돈암동 620	
변경	"	1	10	305	"	성북구 돈암동 산 48-152	일부구간 선형변경
신설	중로	3	12	260	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-1	성북구 동소문동 271	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기 적	학 교	성북구삼선동 2가 389외 7필지	61,094	한성여자중, 고교
변 경	"	"	60,044	(면적감소 1,050㎡)
기 적	"	성북구동소문동 6가 27-1	20,644.7	돈암국교
변 경	"	"	20,176.7	(면적감소 468㎡)

<p>구 고 시</p>	
<p>◎ 송파구고시 제 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</p> <p>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하 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,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9. 5.1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송 파 구 청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. 사업주체: 한국주택은행 직장주택조 합의 1개조한 대표 구성분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. 위 치: 송파구문정동 104 번지 외 21 필지 나. 대지면적: 4,627.9㎡ 다. 용도및규모: 아파트 10층 1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0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. 건축면적: 12,617.55㎡</p> <p>4. 사업시행시간: 89. 5. -90. 4. 첨부: 설계도서 생략</p> <p>◎ 동대문구고시 제 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92 호(89.4.17) 로 변경결정한 동대문구 답십리동 274 번지 일대리 도시계획사항을 지 형도상에 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9. 5.1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</p>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조서				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기 정	국민학교	동대문구답십리동 274 일대	14,432	답십리국교
변 경	"	"	14,386	(감. 46 ㎡)

나. 고시도면 : 별첨 (생략)

구 공 고

◎동대문구공고 제 37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완료

1. 서울특별시 제 547 호 ('83.10.20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된 동대문구 장안동 462 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 5. 15

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장안동 462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

다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
- 면적 (토지) : 3,297.1 ㎡

- 규모 (건물) : 6,948.46 ㎡ (지하 1 층 - 지상 3 층간)

라. 사업시행자

주소 : 동대문구 장안동 462 번지

성명 : 대신개발주 대표 지승동

마. 사업의 착수및 준공년월일

착수일 : '84. 9. 5.

준공일 : '89. 5.

바. 사업완료도면 : 별첨 (생략)





◎영등포구공고제 49 호

관 인 개 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인규칙 제 5 조에 의거 우리구 문래제 2 동장인 (일반사무용) 관인술 개각 승인하고 동 규칙제 8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89. 5.

영 등 포 구 청 장

신 인 영		구 인 영		계제 5 동장의 본소민원용 직인. 계인을 신조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인규칙 제 8 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. 1989.5.15 노원구청장	
공인 명	분례제 2 동장의인	공인 명	분례제 2 동장의인		
<p>◎노원구공고 제 148 호</p> <p>관인신조공고 (안)</p> <p>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인규칙 제 2 조 2 항 및 제 3 조 규정에 의거, 우리구 상계제 5 동 민원본소 설치에 따라 상</p>				인 영	 
				공인명	상계제 5 동장의인 본소민원사구전용
					상계제 5 동장의계인 본소민원사무전용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사 령</div>					
◎ 1989년 5월 11 일자 3 급공무원 파견 (면장) 령제 187 호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	
이 계 준	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파견 ('89.5.13 ~ 90.5.12)		내 무 국	지방부이사관	
◎ 1989년 5월 13 일자 기술직공무원전출 령제 189 호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	
김 경 태	경상남도 진주시를 명함		한강천리사업소	지방로목기원보	
◎ 1989년 5월 15 일자 6 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령제 188 호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	
박 경 우	동 작 구		중 구	지방환경기사보	

1989년 5월 16일자 6급기술직공무원면직 형제 190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박종현	원에 의하여 2직을 면함	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
◎ 1989년 5월 15일자 6급이하기술직공무원일괄 처분 취소 형제 191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채희관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(사건 88-38, '89.4.13)에 따라. '88.9.27자 결재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	남산공원관리사업소	지방임업기사
류건덕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(사건 88-39, '89.4.13)에 따라 '88.9.22자 결재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	녹지사업소	지방임업기사보
◎ 1989년 5월 15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공무원면직 형제 192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태협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지적과	지방별정직 8급상당
이성희	"	경찰국면허과	지방별정직 7급상당
조성호	"	"	지방별정직 6급상당
심시경	"	보건환경연구원	지방별정직 7급상당
◎ 1989년 5월 16일자 4급공무원파견 형제 193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홍종민	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면함 ('89.5.16 ~ '90.5.15)	내무국	지방시설기정
◎ 1989년 5월 17일자 6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형제 194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박은숙	성북구	용산구	지방보건(X선)기원
김상민	노천구	성북구	"
주무학	성동구	관악구	"
김국주	용산구	노원구	"

◎ 1989년 5월 17 일자 6 급공무원특별임용 (국비-지방비) 형제 197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순재열	지방행정주사	관악구	행정주사

공무국의 여행명령통보

여행자			여행국	여행기간	여행경비	여행목적
소속	직명	성명				
기획관리실	지방	김주열	일본·홍콩	89.5.17	시비	신규차관도입계약서명 및 OECF 차관도입협의
	부이사관			-5.23		
투자관리	지방	최은섭	홍콩	89.5.19	·	
담당관	행정주사			-5.23		

인사발령통지

형제 195 호

서울특별시울림errick준비단울림errick기획관	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지방부이사관	이사관
부이사관에 임함	김원오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에 포함 89.5.17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환을 명함 89.5.17
대통령	대통령
	내무국 근무를 명함 89.5.17 서울특별시장

◎ 1989년 5월 17 일자 2·3 급공무원전보 형제 196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변의정	동대문구청장	공무원교육원장	이사관
김성순	공무원교육원장	송파구청장	·
김영근	송파구청장	서대문구청장	·
최선길	울림errick기획관	송구부구청장	지방부이사관

◎ 1989년 5월 17일자 6급공무원특별임용(국비-지방비) 명제 197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윤재열	지방행정주사	관악구	행정주사
◎ 1989년 5월 18일자 지방사무관대우선발 명제 198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상진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관으로 대우함.	운수1과	지방행정주사
최차길	"	종로구	"
최해만	"	중구	"
원유봉	"	용산구	"
정두찬	"	성동구	"
이희규	"	동대문구	"
송정주	"	성북구	"
손홍규	"	도봉구	"
권갑	"	노원구	"
박병단	"	은평구	"
윤영천	"	서대문구	"
임원택	"	마포구	"
박장진	"	양천구	"
박경만	"	강서구	"
이중철	"	구로구	"
유전기	"	영등포구	"
윤재열	"	관악구	"
장웅완	"	서초구	"
지병진	"	송파구	"
이인용	"	강동구	"
김장운	"	강남구	"
백재섭	"	남부수도 관리사업소	"
성낙현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좌로 대우함.	송파구	지방토목기사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창배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차로 대우함.	북부건설 사업소	지방토목기사
이돈권	"	동작구	지방보전기사
김성겸	"	중앙구	지방전기기사
김응태	"	도봉구	지방임업기사
윤병현	"	자동차관리 사업소	지방기계기사
김상희	"	목동지구 개발사업소	지방건축기사

1989년 5월 19일자

6급이하공무원전보및과건

병제 199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설성수	보험연금과	관악구	지방행정주사
장철수	"	도봉구	지방행정주사보
홍상기	"	심동구	지방행정주사
송석도	"	중구	"
이동명	법무담당관	은경구	"
이종고	"	중구	지방행정주사보
전구하	"	성동구보건소	"
김명자	노원부녀복지관 파견 (89.5.19 - 89.12.31)	종로구	지방행정주사
김기현	노원부녀복지관	올림픽관리담당관	"
왕난옥	노원부녀복지관 파견 (89.5.19 - 89.12.31)	부녀복지과	지방행정주사보
위흔량	노원부녀복지관	강동구	지방행정서기
정인자	"	강서구	지방행정서기보
김경식	"	"	지방행정주사보
최용백	문화담당관	도봉구	지방행정주사
이형희	"	영등포구	지방행정주사보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서원섭	충북군로청3년회관	총과구	지방행정주사보
최종문	교통과 파견 (89.5.19-89.12.31)	영등포구	.
이한성	서대문구	서부위생처리장	.
최증림	서초구	중구	.
서연성	영등포구	동작구	지방행정주사
정성수	시정개발담당관 파견 (89.5.19-89.12.31)	증광구	.
공정운	서초구 파견 (89.5.19-89.12.31)	성동구	지방행정서기
김한웅	중합민원실 (지민불원선교센터) 파견 (89.5.19-89.12.31)	서대문구	지방행정주사보

서울특별시